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2024. 6.

금 융 위 원 회

1. 일정규모 이상 자기주식 보유시 공시의무 부과 [안 제176조의2 제6항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자사주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사주 활용방향 등에 따라 주식 가치가 급변할 수 있으나,
 - 일부 기업은 자사주 매입 후 장기간 보유하면서도 구체적인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황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*를 작성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
 - * 자기주식 보유현황, 자기주식 보유목적, 추가 자기주식 취득계획, 자기주식 소각 및 처분계획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자사주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일반주주 보호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[안 제200조의3 제2항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재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, 배당권, 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고 있으나,
 -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·관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여, 대주주 등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을 제한
 - * 합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주 배정 제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대주주 등의 자기주식을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,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